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0451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0451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1나5095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주식회사 A

피고, 피상고인주식회사 다우기술

판결 선고 2015. 1. 29.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1나509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에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 유한회사의 승낙이나 그에 대한 통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매매계약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민일영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